

중앙도서관 전자자료 이용 지침

- 제정: 2012년 1월 30일
- 개정: 2015년 2월 28일
2019년 8월 30일
- 관리부서: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지원팀

제 1조 (목적)

이 지침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(이하 “도서관” 이라 한다)의 전자자료의 불법 오남용으로 인한 출판사의 경고, 서비스 중단 등의 피해에 따른 선의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정의)

전자자료는 학술 DB, 전자저널, e-book, 동영상강의를 지칭한다.

- ① 학술 DB: 정보제공사가 여러 개의 저널 출판사로부터 저널 원문을 수집하여 통합 서비스 하거나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칭
- ② 전자저널: 인쇄학술지의 volume, issue (권 호)가 동일하게 제공되는 전자정보 서비스로 주로 해외학술지 출판사에서 제공
- ③ E-book: 인쇄형 단행본과 유사하게 보이는 디지털 자료로 일반적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라이선스가 부여되기도 함
- ④ 동영상 강의자료: 도서관에서 구입한 교육용 VOD

제 3조 (이용)

- ① 전자자료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출판사와의 License-Agreement에 합의된 내용을 적용한다.
- ② 전자자료 이용은 숙명여자대학교 구성원에 한한다. 도서관 규정 제17조 (열람자격)을 따른다. 단, 졸업생 도서관 이용증 신청자 (학부/대학원 졸업, 수료)의 교외접속은 제외한다.

제 4조 (이용 세부 기준)

도서관은 전자자료의 이용통계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, 전자자료의 적절한 이용을 통하여 서비스의 안정화에 노력하며, 다음과 같은 이용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.

- ① 1일 최대 허용범위: 동일 PC (IP)에서 동일 출판사 논문 30건 다운로드
- ② 불법 이용기준
 1.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량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
 2. 전권을 저장 또는 인쇄 행위
 3.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 단시간 대량 저장 또는 인쇄행위
 4. 저장 (인쇄 포함)한 자료를 교육 및 연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
 5. ID, PW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
- ③ 기타 일반적인 저작권 사항을 준수해야한다

제 5조 (제재 방안)

전자자료의 불법 이용 시 제재방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해당 출판사의 이용 제한
- ② 출판사의 변상 요구 시 해당 이용자가 변상

부칙 1

이 지침은 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2

이 지침은 2015년 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 3

이 지침은 2019년 8월 30일 부터 시행한다.